
Policy and Law Report _Vol.18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29.~4.4.) -

April 5,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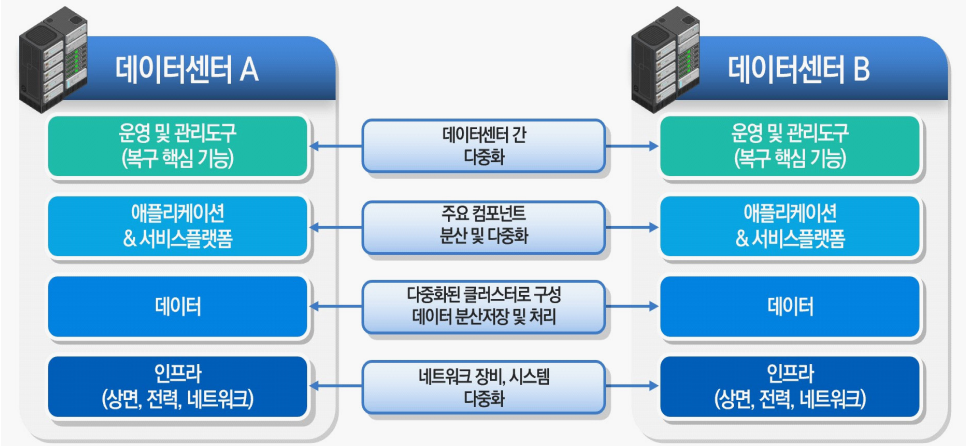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함께 데이터를 보관·소통하는 데이터센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디지털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장애·재난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을 넘어 일상 및 사회·경제로 피해가 빠르게 전파되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 배터리 이상징후 모니터링 계측주기 단축 및 「사전 복합 탐지체계」 구축 - 배터리실 내 기타 전기설비(전력선 등) 금지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 -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등 ‘전력공급 연속성’ 제고 < 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예시 > 배터리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② 디지털서비스의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 ‘복구 핵심 기능’ 다중화 및 중요도에 따른 ‘서비스 분산 체계’ 구축 - 사전예방, 탐지·전파, 복구 목표·지표 설정, 사후관리 등 장애관제 고도화	2023-03-30

부처	내용	일시						
	< 복수 데이터센터 사용사업자 다중화 체계 예시 >  ③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 디지털서비스로 전주기적 재난관리 확대(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 - 대응전담팀 신설,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상시 위기관리 강화 <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안) >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통신 (기준)</th><th>데이터센터 (신규)</th><th>부가통신서비스 (신규)</th></tr> </thead> <tbody> <tr> <td> ▶ 가입자 수 10만명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 ▶ 네트워크 장애 예방·대응 ▶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등 </td><td> ▶ 바닥면적 2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화재 예방, 전력 생존성 확보 ▶ 보호조치 기준 강화 등 </td><td> ▶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 2% 이상 ▶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 *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 ▶ 핵심기능 다중화, 주요 서비스 분산 등 </td></tr> </tbody> </table>	기간통신 (기준)	데이터센터 (신규)	부가통신서비스 (신규)	▶ 가입자 수 10만명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 ▶ 네트워크 장애 예방·대응 ▶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등	▶ 바닥면적 2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화재 예방, 전력 생존성 확보 ▶ 보호조치 기준 강화 등	▶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 2% 이상 ▶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 *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 ▶ 핵심기능 다중화, 주요 서비스 분산 등	
기간통신 (기준)	데이터센터 (신규)	부가통신서비스 (신규)						
▶ 가입자 수 10만명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 ▶ 네트워크 장애 예방·대응 ▶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등	▶ 바닥면적 2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화재 예방, 전력 생존성 확보 ▶ 보호조치 기준 강화 등	▶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 2% 이상 ▶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 *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 ▶ 핵심기능 다중화, 주요 서비스 분산 등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함 * 첨단산업 (①반도체, ②배터리, ③전자 IT, ④바이오, ⑤로봇, ⑥청정에너지), 주력산업 (⑦자동차, ⑧조선 항공, ⑨석유화학, ⑩철강)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살살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함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2023-03-30						

부처	내용									일시																																																												
	< 1단계 과제 발굴 현황 >																																																																					
	구분	환경	입지물류	인증	안전	노동교육	무역	R&D	기타	계																																																												
	공통		17	11	8	3	6	8	3	7	63																																																											
	첨단	반도체	3			5	1				9																																																											
		배터리	1		1						2																																																											
		전자	3			2				1	6																																																											
		바이오			2	7					9																																																											
		로봇*								1	1																																																											
		청정에너지		7	3	7					17																																																											
	주력	자동차		2	8	6			2		18																																																											
		조선·항공	2				2			1	5																																																											
		석유화학	4								4																																																											
		철강	3								3																																																											
	계		33	20	22	30	9	8	5	10	137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51개 로봇관련 과제는 포함(별도 추진중)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																																																																					
	<table><tr><th>구분</th><th colspan="9">주요 개선 방향</th></tr><tr><td>환경</td><td colspan="9">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 규제 합리적 조정,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등</td></tr><tr><td>입지</td><td colspan="9">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 경자구역 규제 완화 등</td></tr><tr><td>인증</td><td colspan="9">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 주기 완화 등</td></tr><tr><td>노동·교육</td><td colspan="9">경직적인 노동 규제 완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등</td></tr><tr><td>무역</td><td colspan="9">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td></tr></table>										구분	주요 개선 방향									환경	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 규제 합리적 조정,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등									입지	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 경자구역 규제 완화 등									인증	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 주기 완화 등									노동·교육	경직적인 노동 규제 완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등									무역	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								
	구분	주요 개선 방향																																																																				
	환경	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 규제 합리적 조정,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등																																																																				
	입지	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 경자구역 규제 완화 등																																																																				
	인증	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 주기 완화 등																																																																				
	노동·교육	경직적인 노동 규제 완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등																																																																				
	무역	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table><tr><th>구분</th><th colspan="9">주요 개선 방향</th></tr><tr><td>반도체</td><td colspan="9">반도체 첨단 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환경 규제 해소 등</td></tr><tr><td>바이오</td><td colspan="9">혁신 서비스·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 등</td></tr><tr><td>로봇</td><td colspan="9">배달·물류 등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등</td></tr><tr><td>청정에너지</td><td colspan="9">미비된 안전·인증 기준 마련, 입지·물류 등의 애로 해소 등</td></tr></table>										구분	주요 개선 방향									반도체	반도체 첨단 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환경 규제 해소 등									바이오	혁신 서비스·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 등									로봇	배달·물류 등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등									청정에너지	미비된 안전·인증 기준 마련, 입지·물류 등의 애로 해소 등																		
	구분	주요 개선 방향																																																																				
	반도체	반도체 첨단 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환경 규제 해소 등																																																																				
	바이오	혁신 서비스·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 등																																																																				
로봇	배달·물류 등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등																																																																					
청정에너지	미비된 안전·인증 기준 마련, 입지·물류 등의 애로 해소 등																																																																					

부처	내용	일시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함 <table><tr><th>구분</th><th>주요 개선 방향</th></tr><tr><td>자동차</td><td>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증 관련 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개선 등</td></tr><tr><td>조선·항공</td><td>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td></tr><tr><td>석유화학·철강</td><td>친환경 원료 활용 등 高탄소 산업의 친환경화 지원 등</td></tr></table> < 1단계 과제 발굴 현황 > <table><tr><th>구분</th><th>주요 개선 방향</th></tr><tr><td>공동 과제 (63건)</td><td>①(환경) 美·日과 같이 화학물질 정보확보 및 평가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 ②(환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영업허가제를 EU·美 등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③(입지)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동반 입주 허용 ④(입지) 산단 입주업종의 정례적 재검토 근거 마련 ⑤(인증) 어린이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td></tr><tr><td>첨단 산업 (44건)</td><td>⑥(반도체) 고압가스 방호벽 재질의 다양화 기준 마련 ⑦(바이오)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정의·분류체계 마련 ⑧(청정에너지) 암모니아,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 안전기준 마련</td></tr><tr><td>주력 산업 (30건)</td><td>⑨(자동차)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 ⑩(조선) 조선분야 E-9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9 제도 신설 ⑪(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의 사용근거 마련</td></tr></table>	구분	주요 개선 방향	자동차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증 관련 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개선 등	조선·항공	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	석유화학·철강	친환경 원료 활용 등 高탄소 산업의 친환경화 지원 등	구분	주요 개선 방향	공동 과제 (63건)	①(환경) 美·日과 같이 화학물질 정보확보 및 평가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 ②(환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영업허가제를 EU·美 등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③(입지)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동반 입주 허용 ④(입지) 산단 입주업종의 정례적 재검토 근거 마련 ⑤(인증) 어린이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첨단 산업 (44건)	⑥(반도체) 고압가스 방호벽 재질의 다양화 기준 마련 ⑦(바이오)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정의·분류체계 마련 ⑧(청정에너지) 암모니아,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 안전기준 마련	주력 산업 (30건)	⑨(자동차)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 ⑩(조선) 조선분야 E-9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9 제도 신설 ⑪(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의 사용근거 마련			
구분	주요 개선 방향																			
자동차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증 관련 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개선 등																			
조선·항공	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																			
석유화학·철강	친환경 원료 활용 등 高탄소 산업의 친환경화 지원 등																			
구분	주요 개선 방향																			
공동 과제 (63건)	①(환경) 美·日과 같이 화학물질 정보확보 및 평가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 ②(환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영업허가제를 EU·美 등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③(입지)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동반 입주 허용 ④(입지) 산단 입주업종의 정례적 재검토 근거 마련 ⑤(인증) 어린이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첨단 산업 (44건)	⑥(반도체) 고압가스 방호벽 재질의 다양화 기준 마련 ⑦(바이오)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정의·분류체계 마련 ⑧(청정에너지) 암모니아,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 안전기준 마련																			
주력 산업 (30건)	⑨(자동차)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 ⑩(조선) 조선분야 E-9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9 제도 신설 ⑪(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의 사용근거 마련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확정함 이번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함 *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5대 정책방향 > <table><tr><th>구분</th><th>기업선별</th><th>지원방식</th><th>성과관리</th><th>품질개선</th><th>자원배분</th></tr><tr><td>현재 (As-Is)</td><td>정부 주도</td><td>분절적 지원</td><td>단기성과 위주</td><td>공공 중심</td><td>공급자 중심</td></tr><tr><td>계획 (To-Be)</td><td>①민간 주도</td><td>②집중 · 연계지원</td><td>③지속성장 점검</td><td>④민간공급 확대</td><td>⑤현장 · 성과 중심</td></tr></table>	구분	기업선별	지원방식	성과관리	품질개선	자원배분	현재 (As-Is)	정부 주도	분절적 지원	단기성과 위주	공공 중심	공급자 중심	계획 (To-Be)	①민간 주도	②집중 · 연계지원	③지속성장 점검	④민간공급 확대	⑤현장 · 성과 중심	2023-03-30
구분	기업선별	지원방식	성과관리	품질개선	자원배분															
현재 (As-Is)	정부 주도	분절적 지원	단기성과 위주	공공 중심	공급자 중심															
계획 (To-Be)	①민간 주도	②집중 · 연계지원	③지속성장 점검	④민간공급 확대	⑤현장 · 성과 중심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 - 틱스, 투자형 기술개발(R&D)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先)투자 연계 등을 확대하여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 * 대기업, 선도벤처, 에이씨(AC), 벤처투자사(VC), 마케팅엠디(MD) 등 시장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인물(플레이어) -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벤처투자사(VC), 엠디(MD) 등 플레이어) 위주로 구성 ②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민관공동 선정 후, 5년간 사업화·기술개발(R&D) 2조원 지원 및 전문기관, 확장(스케일업)·세계화(글로벌화) 연계 ** 예시: 수출 1,000만\$ 이상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1.2억원, 기저기술(딥테크) 틱스(TIPS) 기술개발(R&D) 5→15억원 ③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 강화 - 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 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 지속 * 고객수, 매출·수출액, 투자액 등 성장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뿐 아니라, 신규서비스 런칭, 특허 획득, 특정국가 진출, 지점·기반(인프라)수 확대 등 기업활동 목표도 포함 < 마일스톤 평가 및 연차별 관리 모델(안) >  ④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교육,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하며, 세계적(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 * 예시: 중기(中企)연수원이 교육과정 구성, 강사 섭외 → 네이버 등이 직접 소프트웨어(SW) 인재 교육 ⑤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 재편 -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자료(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 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수집 자료(데이터) 항목을 확대하고, 등록 대상 지원사업도 확장(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4.1. 시행)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됨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조)	2023-03-31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3.31. 시행) 환경부장관이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제6조의3)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조정 (제29조제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2023-03-3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 조정 (제54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재협의를 받도록 함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 (별표 3 제3호 및 제17호)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발생설비의 설치 시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 (별표 4 비교) - 농어촌도로에 설치되는 가스공급시설, 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주차시설 설치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4.4. 시행.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교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1.1. 시행 예정)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89조의2제5항 등)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2023-04-0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 이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안 제37조제1항 개정) - 전산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요건 설정 ②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주기, 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39조 신설)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점검주기를 명시하고,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③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규정 (안 제40조 신설) - 재난·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가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해당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절차 및 방법 규정 ④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배타적으로 임차 이용하는 사업자의 조치사항 규정 (안 제41조 신설)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및 임대사업자 협의 등 조치사항 규정 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위임 등 (안 제70조 개정)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⑥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별표9 개정)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및 서비스 중단 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2023-03-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3/30(목)~5/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안전기획과 디지털재난대응TF)로 제출	
고용 노동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③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④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의견 제시기간 : 2023/3/31(금)~4/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로 제출	2023-03-31
공정거래 위원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상 문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 제시 (안 V.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 ‘제공주체,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	2023-03-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시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개정 ② '물량물아주기' 규제 관련,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에 오해가능한 심사지침 문구 개정 (안 IV.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 '물량물아주기' 요건인 '합리적 비교나 고려'와 관련, 법령 규정에 맞추어 '합리적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물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심사지침에 명확히 규정 - '물량물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 효율성 증대효과의 '명백성'을 엄격히 해석한 관련 심사지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 '물량물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긴급성' 요건과 관련, 긴급성 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회사외적요인'을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도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③ '물량물아주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 (안 IV.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개정) - 물량물아주기 '효율성', '긴급성'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 ④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II. 용어의 정의 및 III.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개정)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2.12.27.)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 ※ 의견 제시기간 : 2023/3/30(목)~4/2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내부거래감시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제2항 및 제315조제3항)	2023-03-2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	2023-03-29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023-03-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해당 계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안 제24조의5 신설)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② 예금자들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안 제32조제2항) -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③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 (안 제39조의4 신설) -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④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안 제39조의7 신설)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2023-04-0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내연기관 등 동력발생장치 또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 전자적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2023-04-03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확실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나빠지자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하였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2023년 9월말 상환유예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하이닉스, 동부제철 등 기촉법상 채권단 관리절차를 통한 다수의 기업정상화 사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법원회생절차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실증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2023-04-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29곳, 82%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됨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 내부의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함으로써 기업 재도약 가능성은 높이고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높이하고자 함 (안 제34조 등)	
기획재정 위원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2023-03-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안 제66조 및 제68조) ②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안 제106조 제1항)	2023-03-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업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2023-04-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세액공제율 또한 문화적·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4인)</u>」 현행법은 계약체결 형태의 하나로 단가계약을 두어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발생 시에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업무 등에 있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임. 그러나 여러 기관의 수요가 겹치는 등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2023-04-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 원 등 17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2023-03-2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음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카카오에 이관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8만 건이 넘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 민원은 법률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재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2023-03-2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104조)	2023-03-31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제1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2023-04-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찾으려면 정확도가 높은 GPS나 무선인터넷(Wi-Fi) 측위가 필수적인데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제43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등)	2023-03-3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애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서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적합성평가 취소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한-미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한 것임	2023-04-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현행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자재의 수거 및 취소된 기자재의 중고거래 금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조성적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처별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술기준을 검증·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를 확대하여 이중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8조의3) ② 외국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신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하고자 함 (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69조) ④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안 제58조의8 및 제69조) ⑤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안 제73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사전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융·복합 신제품 출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 출시 지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엄격한 사전규제 및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국내 ICT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ICT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판매·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만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조·수입·판매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가능한 기관에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ICT 신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2조 등)	2023-04-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준식의원 등 14인)」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 16조제3항)	2023-03-31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2023-03-30
환경노동 위원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3-03-3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조제7호 및 제7조의2 신설, 제1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제24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제43조의2 신설,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023-03-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국토교통 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안 제29조의3 제1항, 제29조의3제4항 신설 등)	2023-04-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4/3(월) 15:0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처리	
	4/4(화) 14:0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4/5(수) 14:0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4/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9호 발간 -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 입법례	
	4/5(수)	「World&Law」 제2023-7호 발간 - 아슬아슬 원자재 공급망, 지금 세계는?	
	4/5(수)	「금주의 서평」 제622호 발간 - 마스크 파노라마	
예산정책처	4/5(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입법조사처	4/3(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미래연구원	4/3(월)	「Futures Brief」 제23-05호 발간 -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별첨1] 제405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외통위	4/4(월)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방위	4/4(화)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4/5(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4/6(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농해수위	4/3(월) 10:00	전체회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질의
첨단전략 산업특위	4/5(수) 10: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인구위기 특위	4/6(목) 10:00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3(월) 10:00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서영석·백종헌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3(월) 13:30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	전혜숙·최영희 의원실, (사)건강소비자연대	의원회관 3세미나실
4/3(월) 14:00	스마트돌봄 혁신 포럼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층 로비
4/4(화) 10:00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윤덕·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4(화) 14:00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실
4/5(수) 14:00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	이달곤·윤재갑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4/6(목) 10:00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김민철·김한규·김희재· 도종환·최종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4/6(목) 13:30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정우택·성일종· 하영제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6(목) 14:00	국토·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6(목) 15:3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유의동·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6(목) 19:00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	유의동 의원실, 협동조합 하우스	여의도 놀이터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3/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8호 발간 - 미국의 재난지원 조정 및 온라인 공개법(안)	
예산정책처	3/31(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발간	
	3/31(금)	「2023 경제전망」 발간	
입법조사처	3/28(화)	「이슈와 논점」 발간 -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3/29(수)	「이슈와 논점」 발간 -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30(목)	「이슈와 논점」 발간 -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7(월) 09:30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8(화) 10:00	2023년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8(화) 10:00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8(화) 14:00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의원회관 306호
3/28(화) 14:00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이용선·양이원영 의원실, 에너지전화포럼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3/30(목) 10:00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김영식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켄싱턴 호텔 여의도 2F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